대전보건대학교 디지털배지에 관한 규정

2026. 04. 03. 최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획득한 학습성과와 역량을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디지털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발급,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배지”란 학습자의 역량, 성취, 자격 등을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전자 증명서로서 국제표준(Open Badge)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2. “발급기관”이란 배지를 발급하는 대학의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을 의미한다.
3. “수여자”란 배지를 취득한 학생, 교직원 또는 외부 참여자를 의미한다.
4. “배지 메타데이터”란 배지의 발급 기준, 발급기관, 취득 조건, 검증 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배지 운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운영주체) ①배지 운영 총괄부서는 RISE사업단으로 한다.

②발급 관리 부서는 학생취업처(재학생), 평생교육원(재직자, 시민 등 외부인)으로 한다.

③학과 및 부속기관,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배지 발급기관이 될 수 있다.

제3장 배지 설계 및 발급

제5조(배지 유형) 배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과형 배지: 정규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과 관련된 배지
2. 비교과형 배지: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 이수에 따른 배지
3. 자격형 배지: 자격증, 인증시험 등 성과에 따른 배지
4. 통합형 배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성과 달성 시 부여하는 종합 배지

제6조(배지설계 기준) ①모든 배지는 학습성과 및 역량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발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지 명 및 설명
2. 학습 목표 및 성취 역량
3. 이수 기준 및 평가 방법

4. 발급 조건 및 수준(Level)
5. 발급 기관 및 검증 정보

③배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발급기준) ①배지는 사전에 승인된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동일 배지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지를 발급할 수 없다.

1.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학습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총괄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9조(발급절차) 배지의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 설계 및 총괄부서 승인
2.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3. 이수자 평가 및 검증
4. 배지 발급 및 시스템 등록
5. 수여자에게 통지 및 활용 안내

제4장 활용 및 연계

제10조(활용범위) 배지 수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취업 및 경력 인증
2. 포트폴리오 구축
3. 학습 이력 관리
4. 마이크로디그리 연계
5. 평생교육 인증
6. 학생 및 시민 인증제

제11조(외부 연계) 디지털 배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 공공기관과 연계
2. 지자체와 연계
3. 기타 대학과 협약 또는 협업을 하는 기관과 연계

제5장 권리 및 의무

제9조(수여자의 권리) ①수여자는 배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②수여자는 배지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부정사용 금지) ①누구든지 배지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금지한다.

②위반 시 배지 취소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1조(지침의 제정) ①배지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급기관별 별도 지침으로 관리한다.
②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지침 제정 시 총괄부서의 승인 후에 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 이후 배지 발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